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24-9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	무의 1
	민간위탁 동의안(산림과)	1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9

제출자

거창군수

1. 요구이유

○ 항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 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2024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나. 위 치 : 항노화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다. 사 업 비 : 93.470천원(국 46.735 도 32.714 군 14.021)

라. 사 업 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마. 시설현황

- O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등
- O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 · 산림치유) 기획 · 운영
- O 산림서비스(대면 빛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O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 사. 위탁기간 : 2024. 4. ~ 12.(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 아. 향후계획
 - O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평가

3. 참고사항

가. 2023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3. 4. ~ 12.

O 장 소: 항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명상장 등

O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

O 인 원: 1회 20명이내

O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O 운영방법: 각 프로그램별 숲해설가(1인)·산림치유지도사(2인) 자율 진행

O 참여인원 : 총 4,615명(숲해설 2,055명, 산림치유 2,560명)

O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예약, 당일 현장모집

O 체 험 료 : 숲해설 무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O 프로그램: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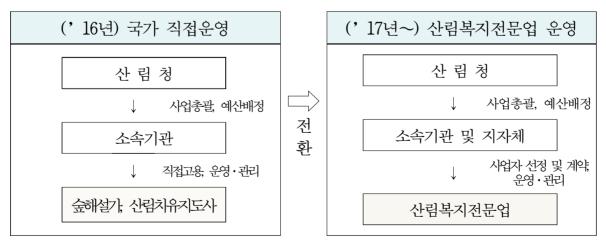
- 숲 해 설 : 주5일, 일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산림치유 : 주6일, 일2회(09:30~12:00, 13:30~16:00)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 O 세외수입: 금19,433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O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 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가분야 활성화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다. 관계법령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 O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O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8조
-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O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관계 법 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①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 서도 아니 된다.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계획 수립)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 2. 치유의 숲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에 따른다.
- ③ 운영·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 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 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 3. 관리위탁 기간
-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